

고용 우선의 경제운용

2018. 11.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 박병원

KEF 한국경영자총협회
KOREA EMPLOYERS FEDERATION

목 차

□ 고용 우선의 경제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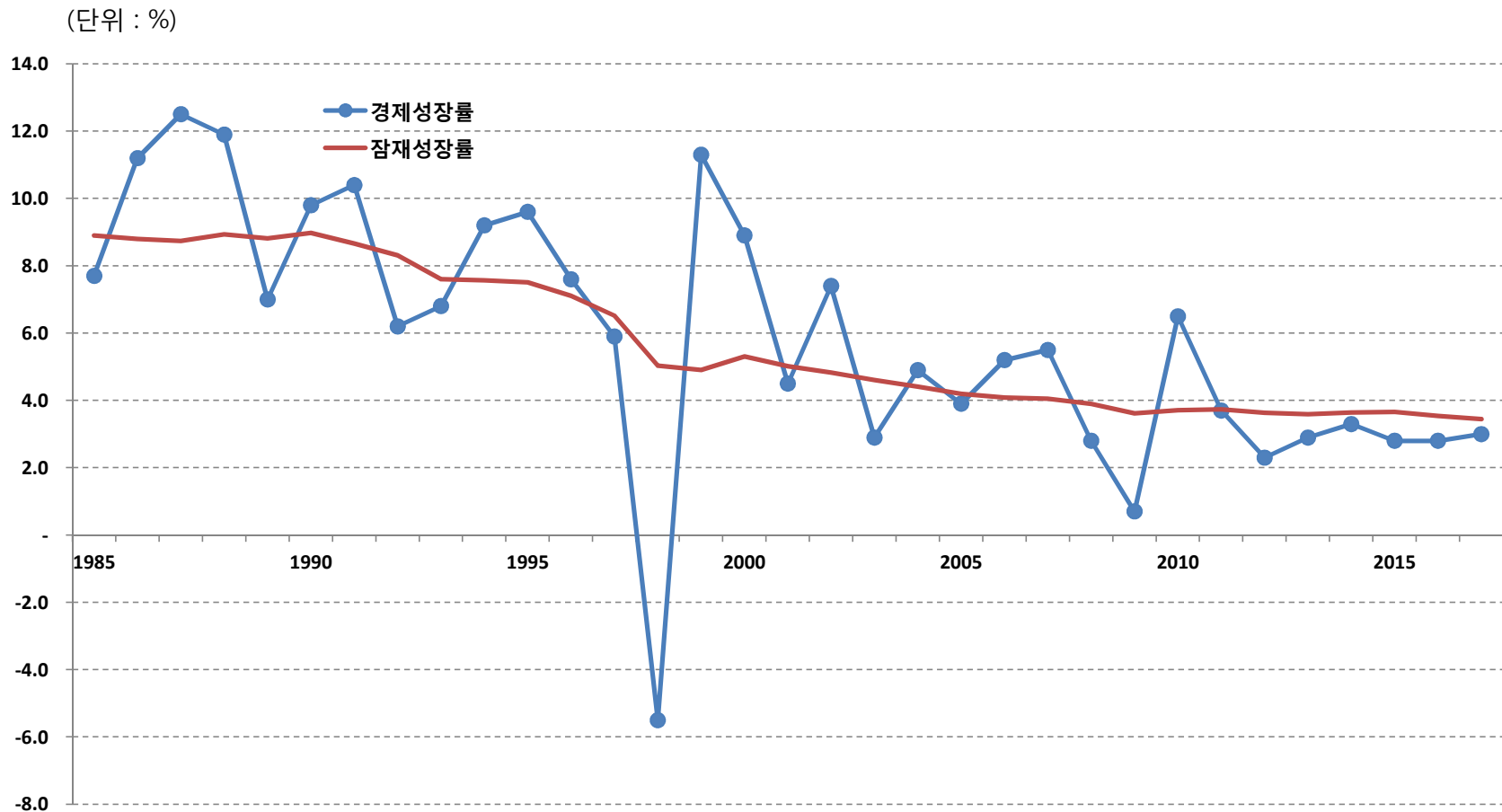
- I. 고용으로 본 한국경제의 현실
- II. 대외경제 지표로 본 일자리 수지
- III. 일자리와 서비스산업 중심의 경제운용
 - 서비스업의 투자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 IV. 고용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I. 고용으로 본 한국경제의 현실

I. 고용으로 본 한국경제의 현실

-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핵심은 공급과잉, 과당경쟁**
- **최근 우리 경제사회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청년층 일자리 창출 부진**
 - 내수부진, 저출산·고령화 등의 문제 악화
 - 고령층은 수명연장 전망 때문에 적극적 소비확대에 한계
 - 주택판매 부진과 건설경기 침체
 - 복지재원 부족 : 세금 낼 사람 안 늘고 복지혜택 받을 사람만 늘어
- **고용문제의 심각성 / 해결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 사회적 공감대 부족**
 - 경제성장률 · 수출증가율 · 물가상승률 등 전통적인 주요 경제지표만 보아서는 잘 드러나지 않아
 - 총량고용지표(실업률, 고용증가 숫자)로도 심각성이 잘 느껴지지 않아

1. 성장률의 하락 추세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OECD, 국회예산정책처

2. 부가가치 10억원당 고용창출 효과

(단위 : 명/10억원)

	2000	2005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제조업	13.2	12.2	10.1	10.0	9.4	8.7	8.5	8.6	8.7
서비스업	21.5	19.5	17.4	17.4	18.3	18.1	18.0	17.8	17.3
농림수산업	62.9	51.1	43.6	40.5	36.6	34.2	33.0	32.9	31.3

주 : '00년은 '00년 실측표, '05~'09년은 '05년 실측표, '10~'14년은 '10년 실측표 기준임
 자료 : 한국은행

* 최종수요 항목별 고용창출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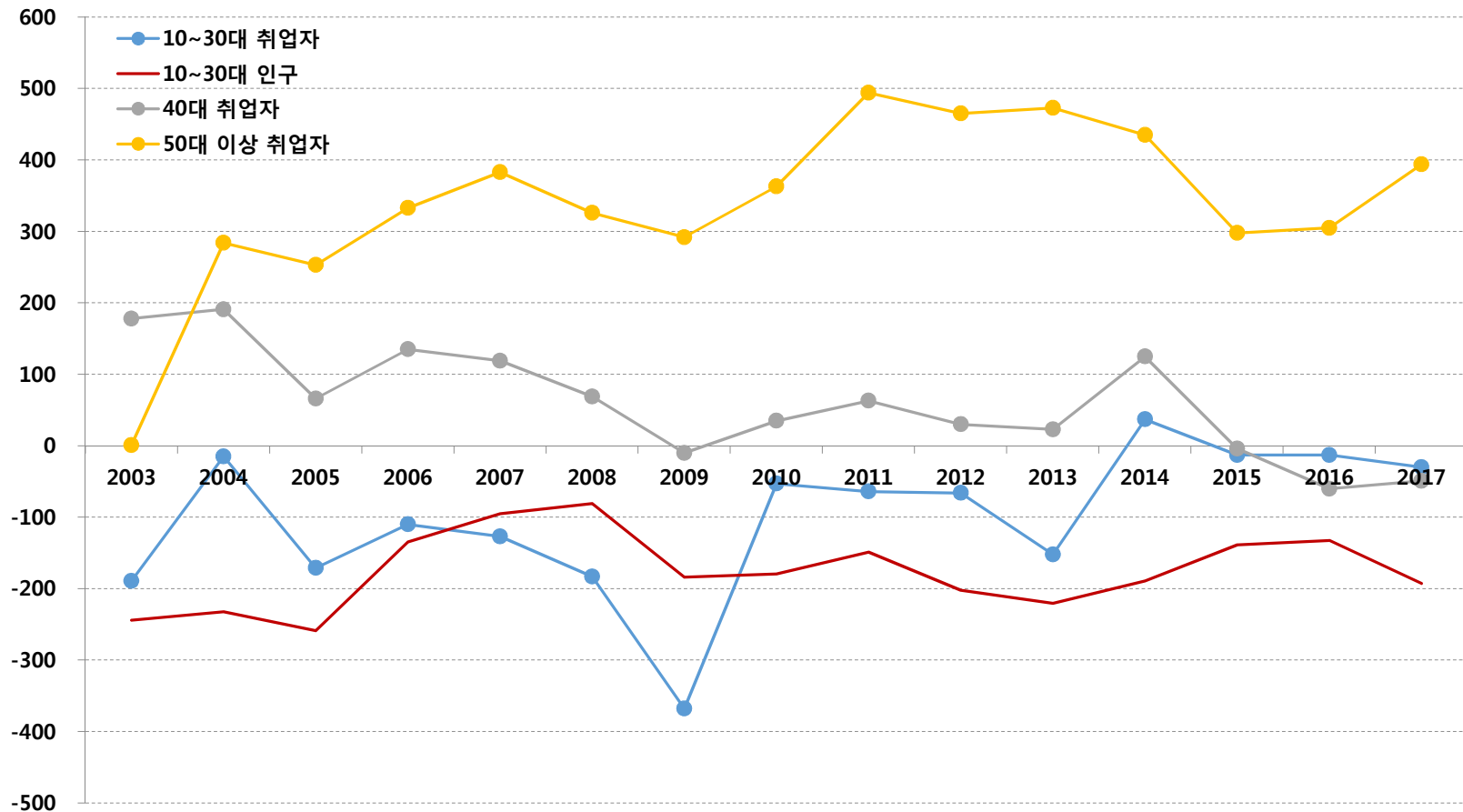
(단위 : 명/10억원)

	2000	2005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소비	25.4	19.1	16.8	16.7	16.5	15.8	15.7	15.5	15.2
투자	19.6	15.3	13.5	14.2	13.7	13.2	13.3	13.4	13.2
수출	15.7	10.8	8.3	8.7	8.3	7.5	7.7	7.8	8.1

주 : '00년은 '00년 실측표, '05~'09년은 '05년 실측표, '10~'14년은 '10년 실측표 기준임
 자료 : 한국은행

3. 연령별 취업자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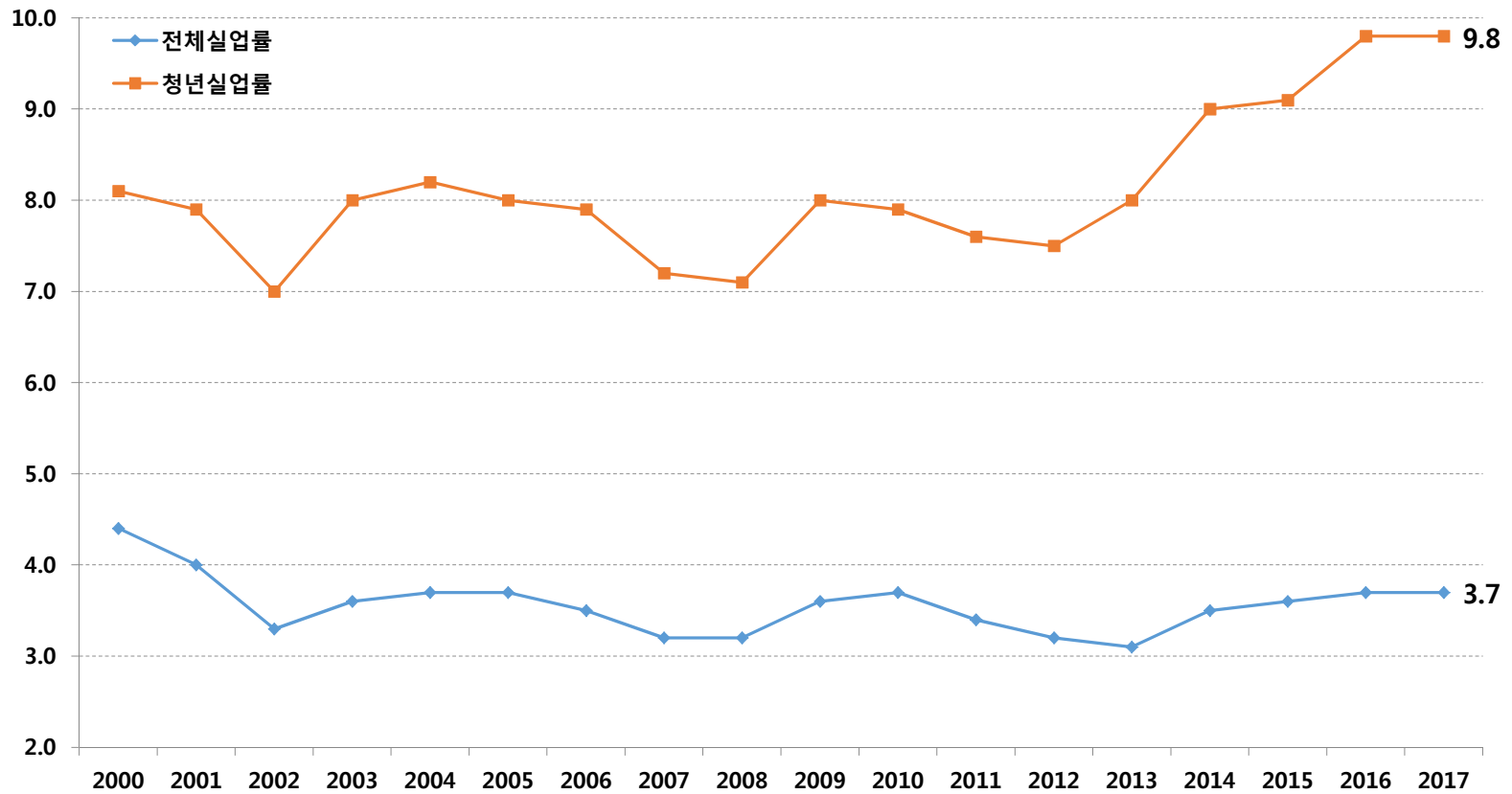
(단위 : 천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4. 최근 청년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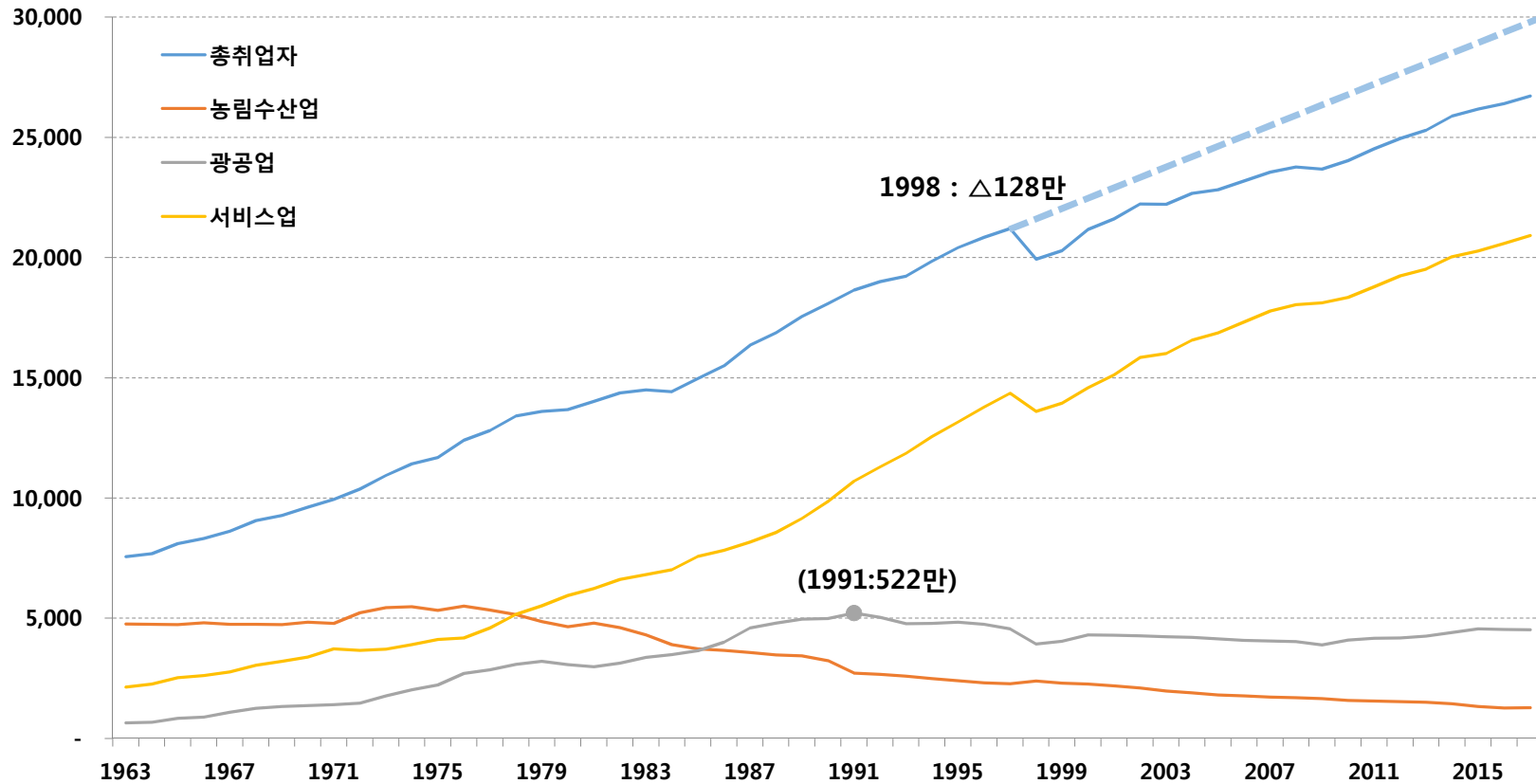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5. 업종별 장기 고용 동향

(단위 :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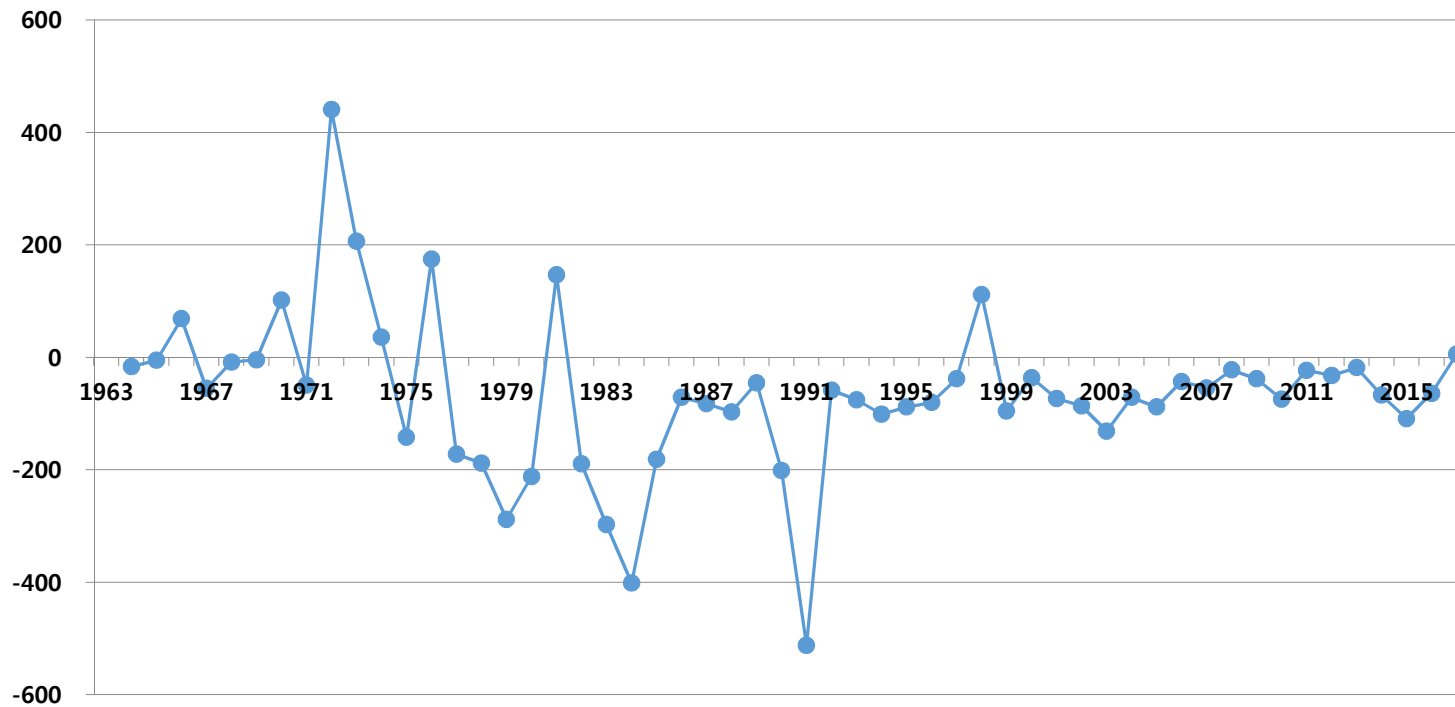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6. 농림수산업 고용 증감

	1963-76	1976-91	1991-2017
연평균 증감(천명)	57.8	Δ185.9	Δ55.6

(단위 :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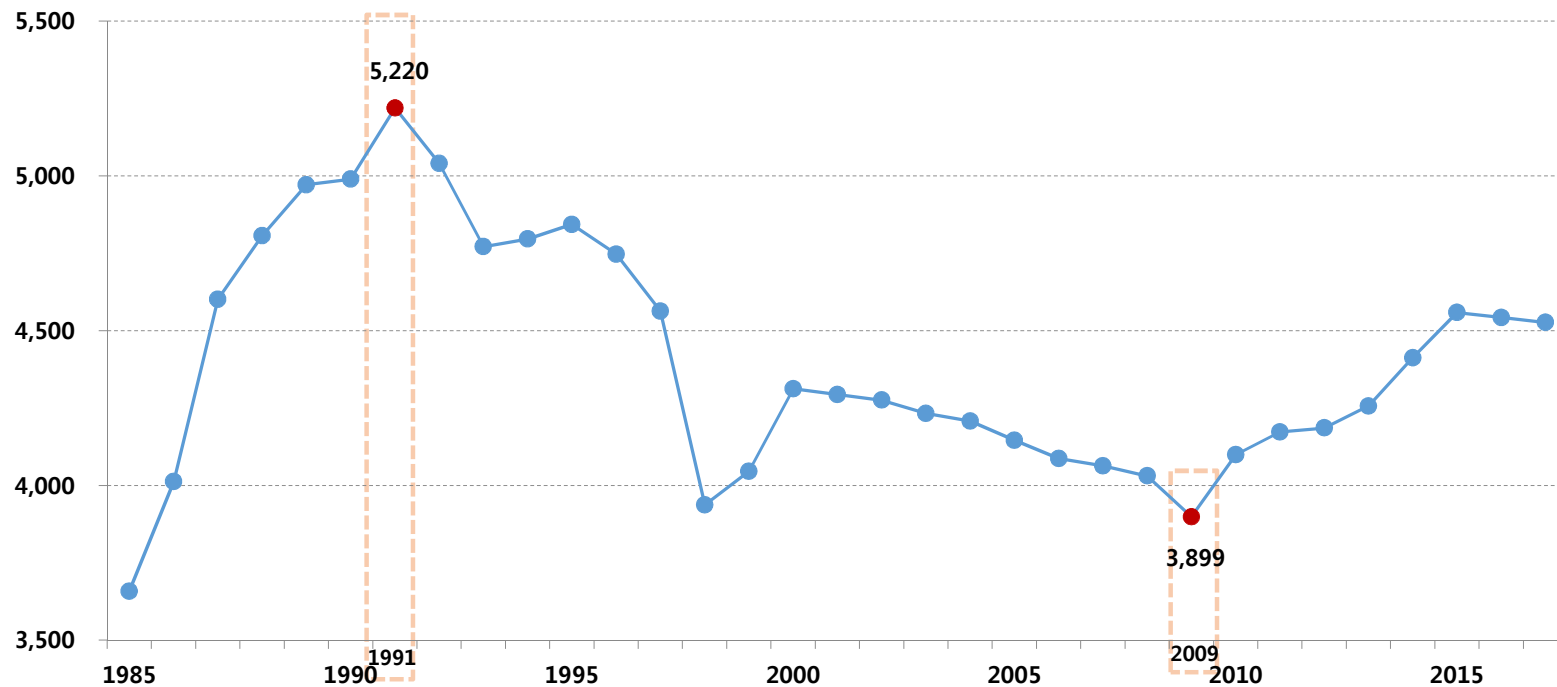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7. 광공업, 1991년 이후 고용감소 추세

- 1992~2009 : △136만, 연 △7.6만, 1992~2017 : △69만, 연 △2.7만
- 1963년부터 1991년까지는 연평균 16.3만개씩 증가

(단위 :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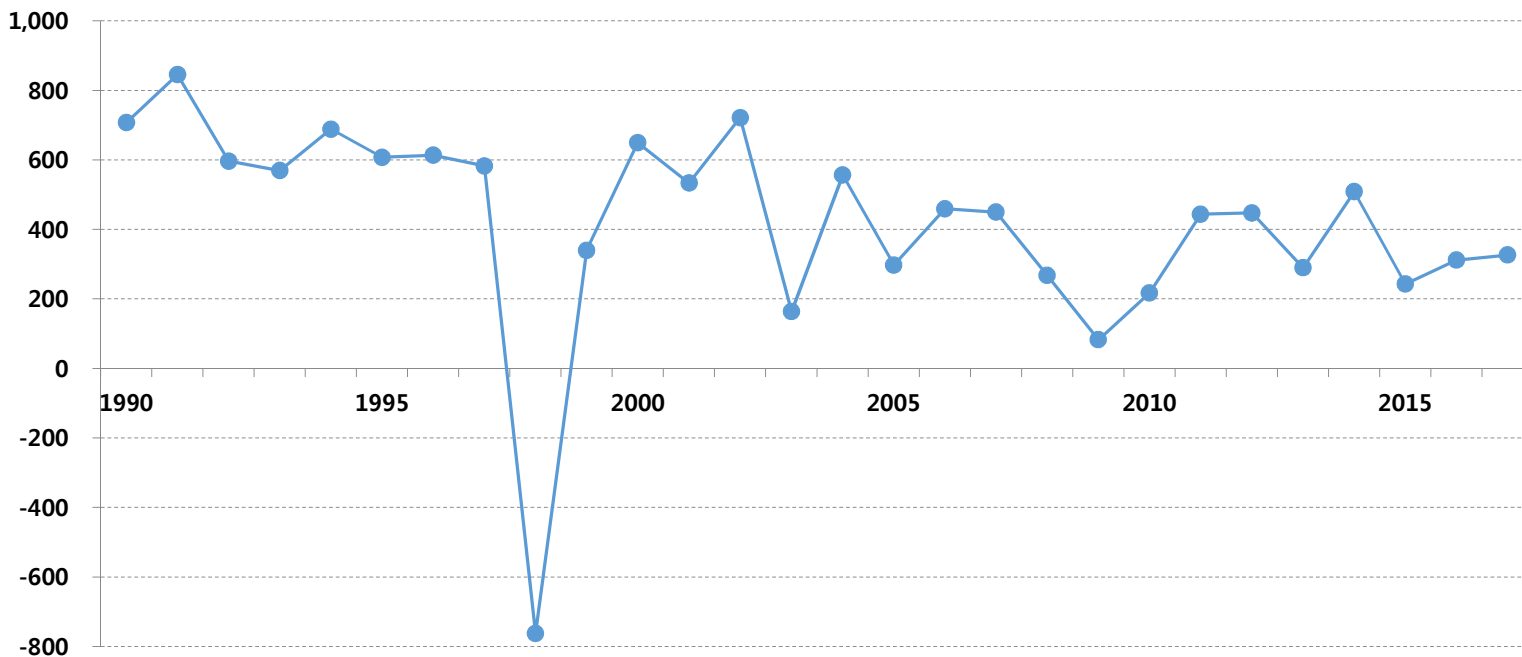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 서비스업에서의 고용증가세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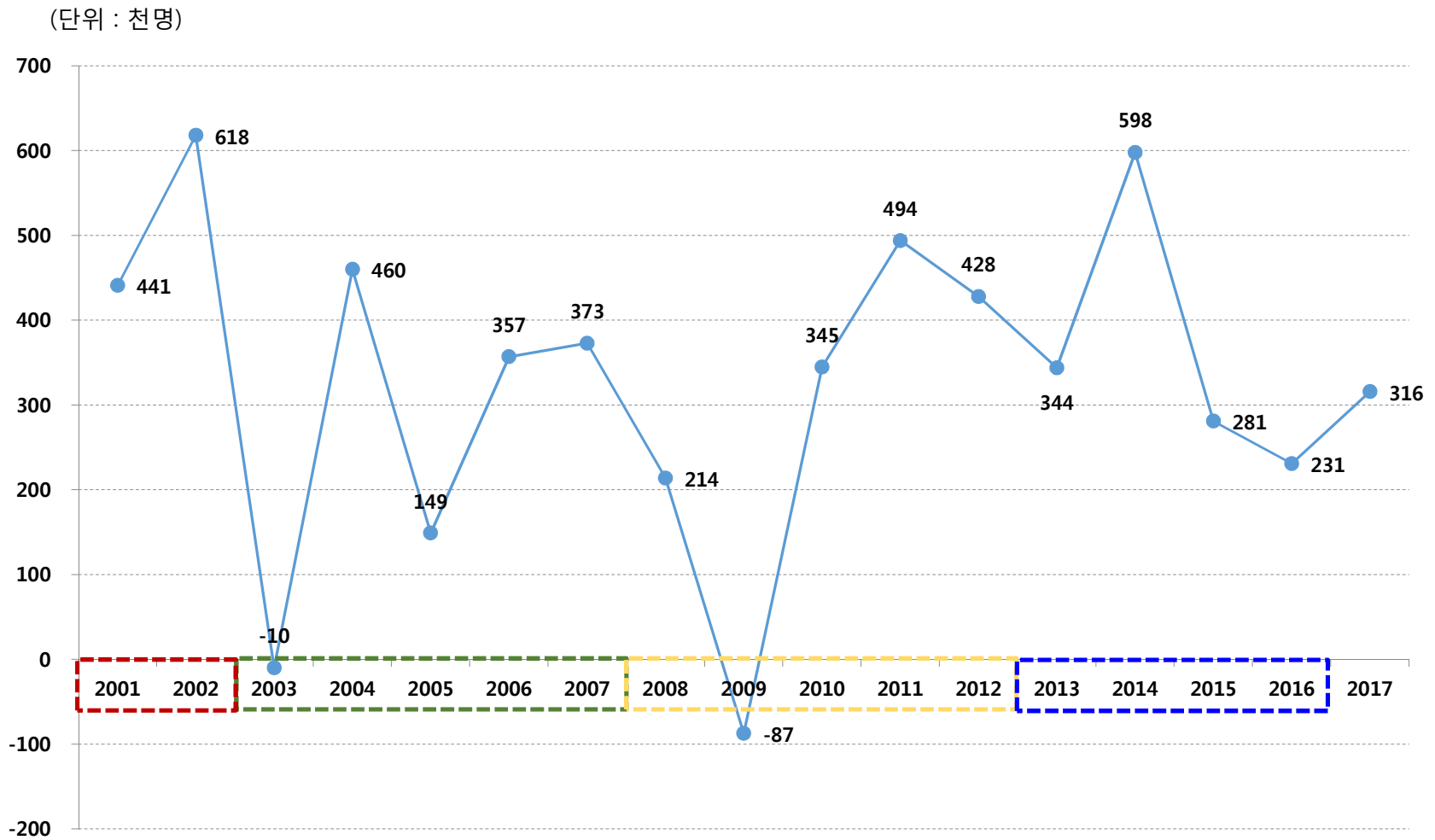
	1963-89	1989-2002	2002-2017
연평균 증감 (천명)	269.5	515.3	338.1
2005년 이후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율은 3%를 넘지 못함			

(단위 : 천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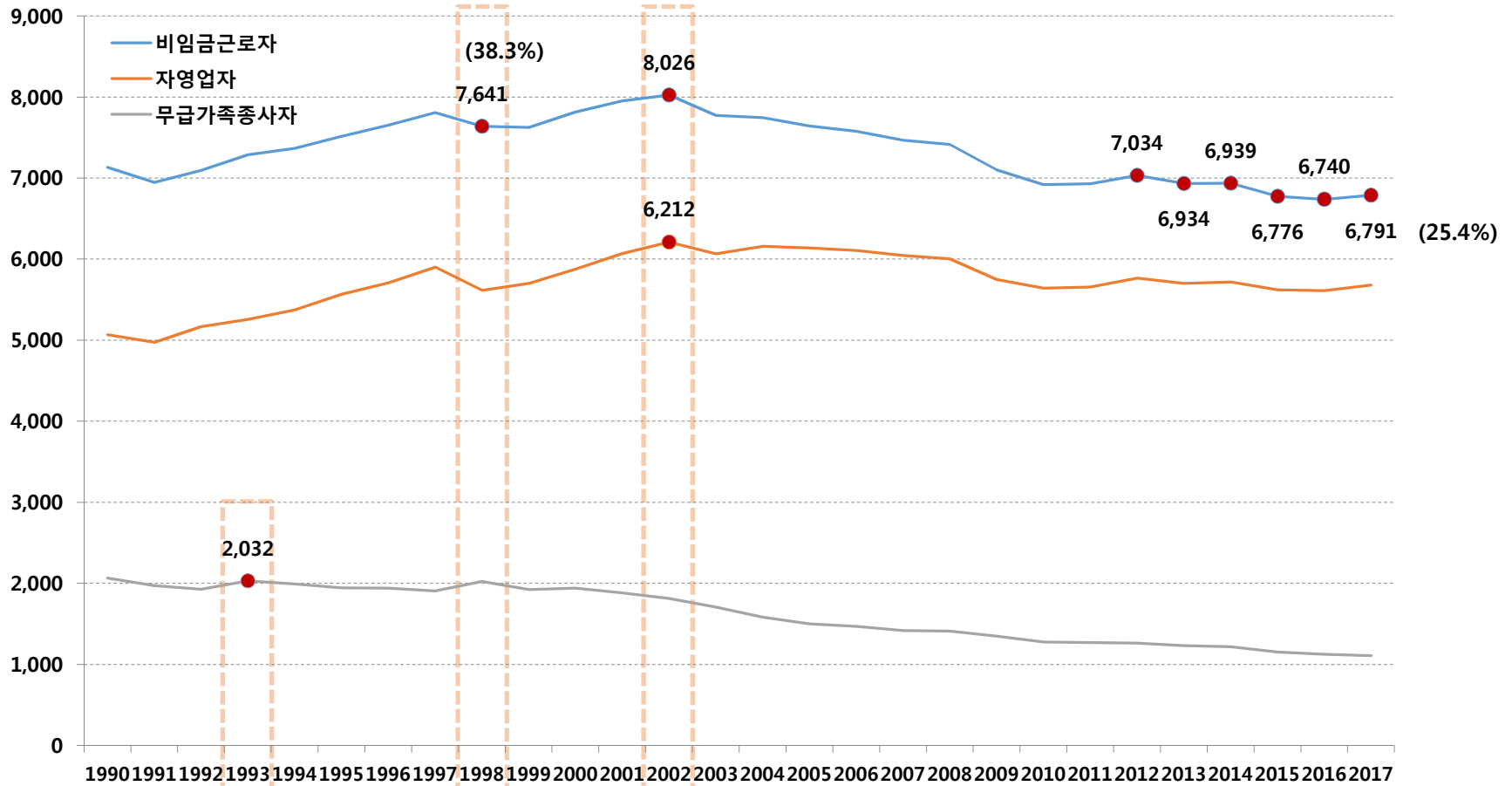
9. 최근의 고용증감 동향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0. 비임금 근로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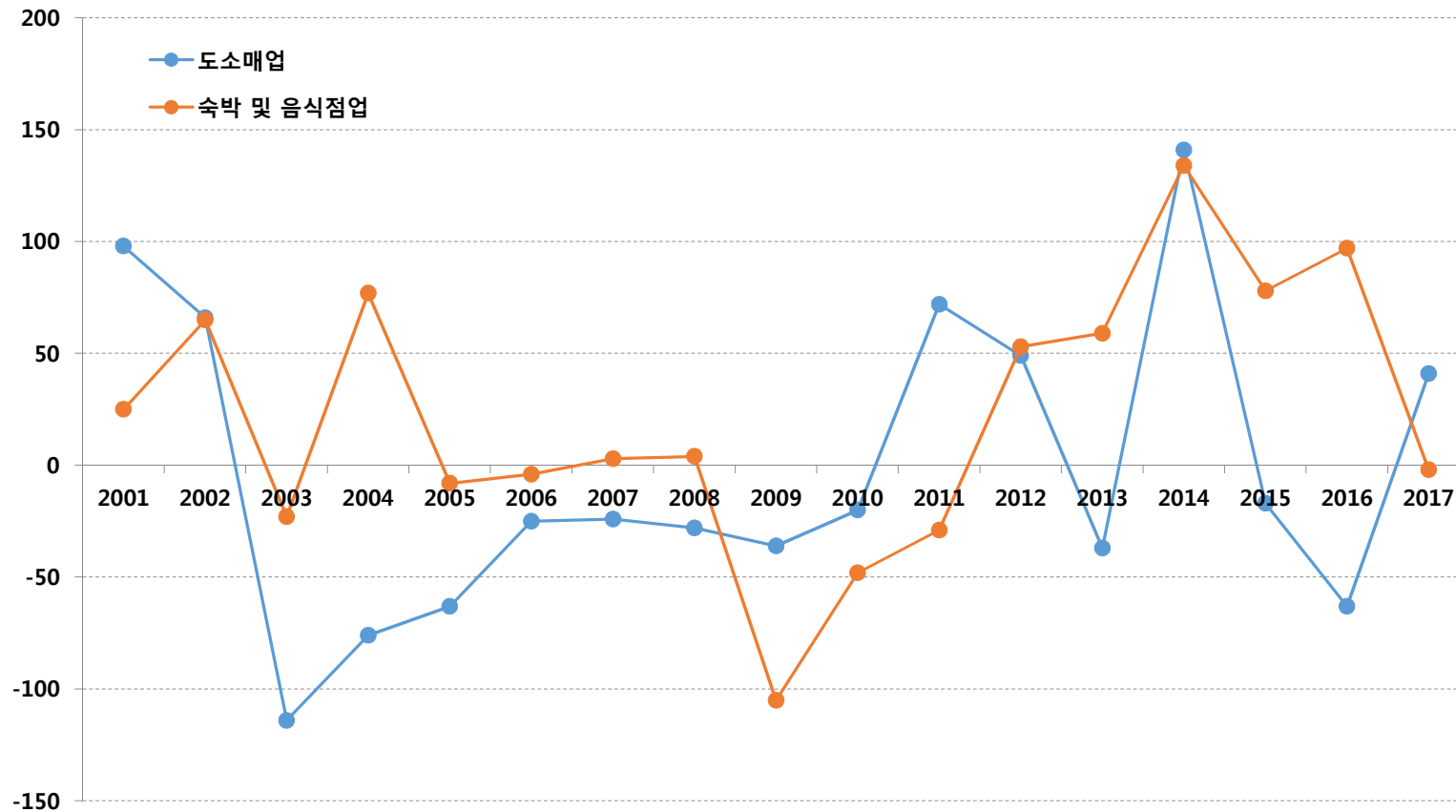
(단위 : 천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1. 도소매 / 숙박 및 음식점업 부문 고용 증감

(단위 :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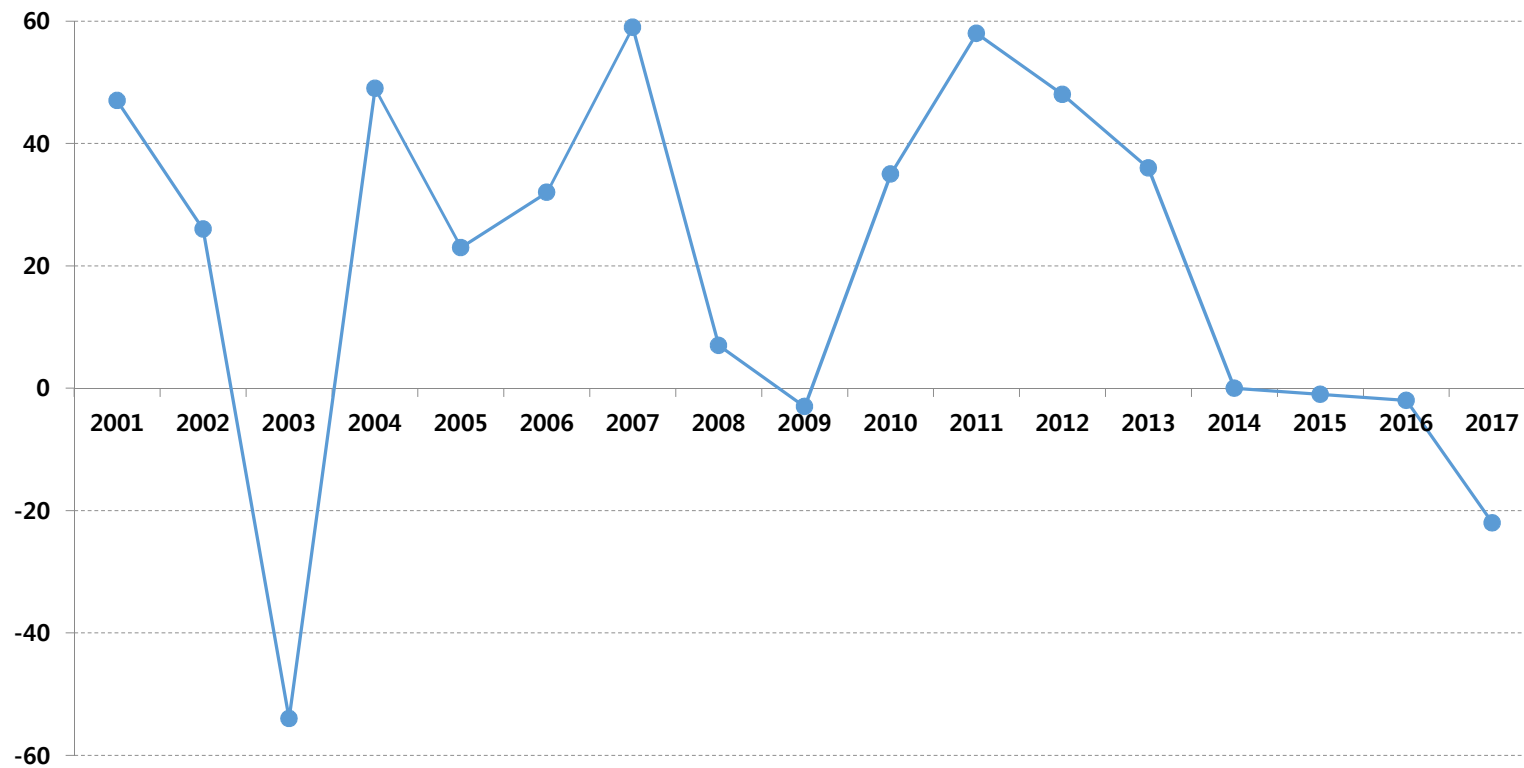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2. 운수업 고용 증감

- 1995~2013년간 택시승객 25% 감소, 택시 수 2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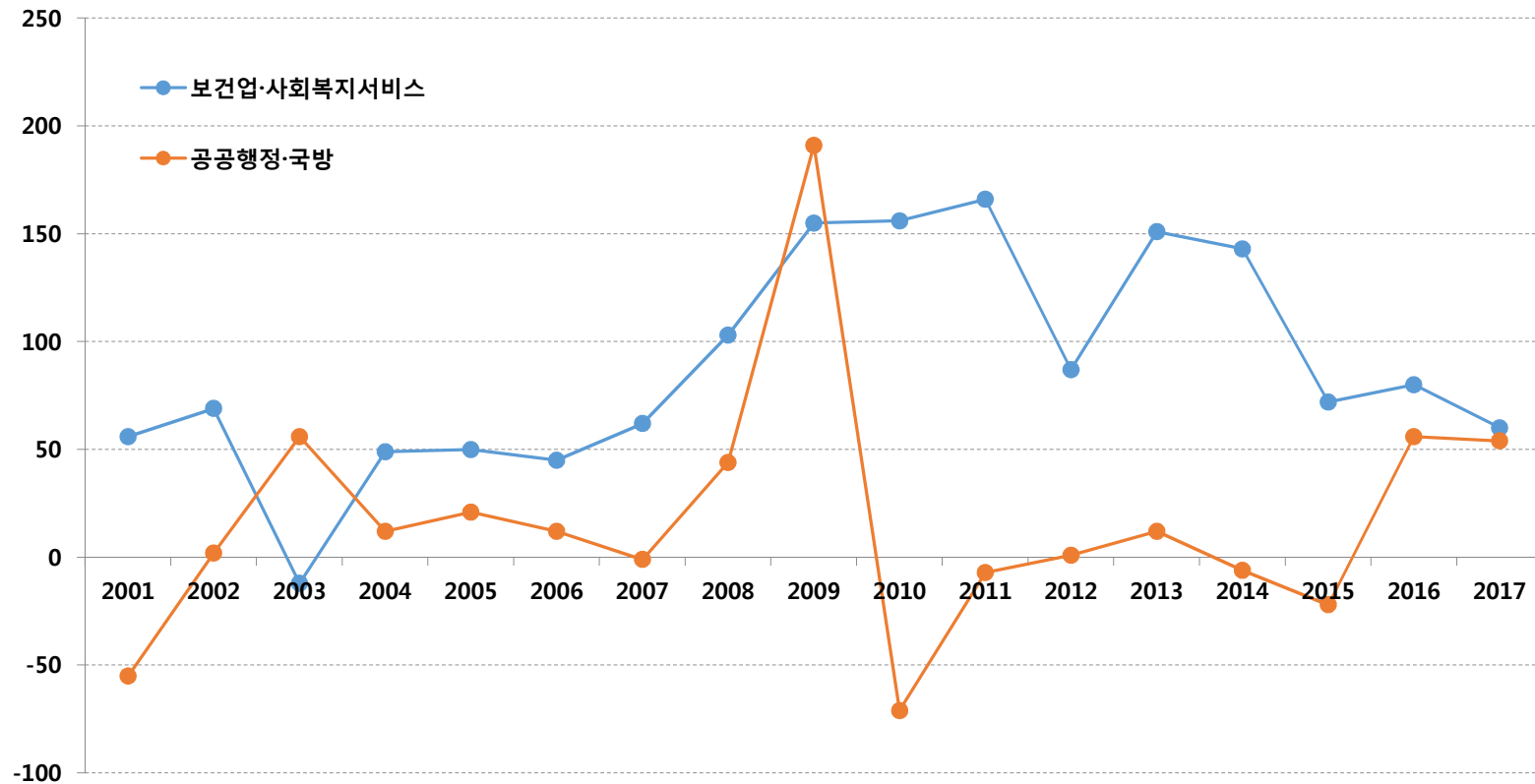
(단위 : 천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3. 보건·사회복지 / 공공행정·국방 부문 고용 증감

(단위 : 천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정권별 고용실적(취업자 증감)

(단위 : 천명)

구분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전체		1,329	1,394	1,454
산업별	농업·임업 및 어업	△387	△189	△258
	광공업	△212	122	357
			제조업	124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929	1,461	1,354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667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1,889	1,826	1,748
	비임금근로자	△559	△433	△29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4. 업종별 고용 증감 동향

(단위 : 천명)

구 분	2003-2007	2008-2012	2013-2016	2015	2016	2017증감	2017총고용
증감 계	1,329	1,394	1,454	281	231	316	26,725
농업 임업 및 어업	-387	-189	-258	-109	-64	6	1,279
광공업	-212	122	357	146	-16	-16	4,527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929	1,461	1,354	249	312	327	20,920
건설업	114	-67	72	25	15	119	1,988
도매 및 소매업	-302	37	24	-17	-63	41	3,794
운수업	109	145	33	-1	-2	-22	1,405
숙박 및 음식점업	45	-125	368	78	97	-2	2,29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413	62	77	56	10	-1	783
금융 및 보험업	81	40	-53	-52	5	-12	791
부동산업 및 임대업	93	-13	87	27	36	45	62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3	328	64	18	48	-7	1,09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294	168	178	68	44	-5	1,29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00	158	40	-22	56	54	1,058
교육 서비스업	418	10	97	5	25	45	1,90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94	667	446	72	80	60	1,92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4	39	-6	30	-21	21	428
기타	223	15	-74	-42	-18	-12	1,54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5. 일자리 어디서 늘리나?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2017년)

(단위 :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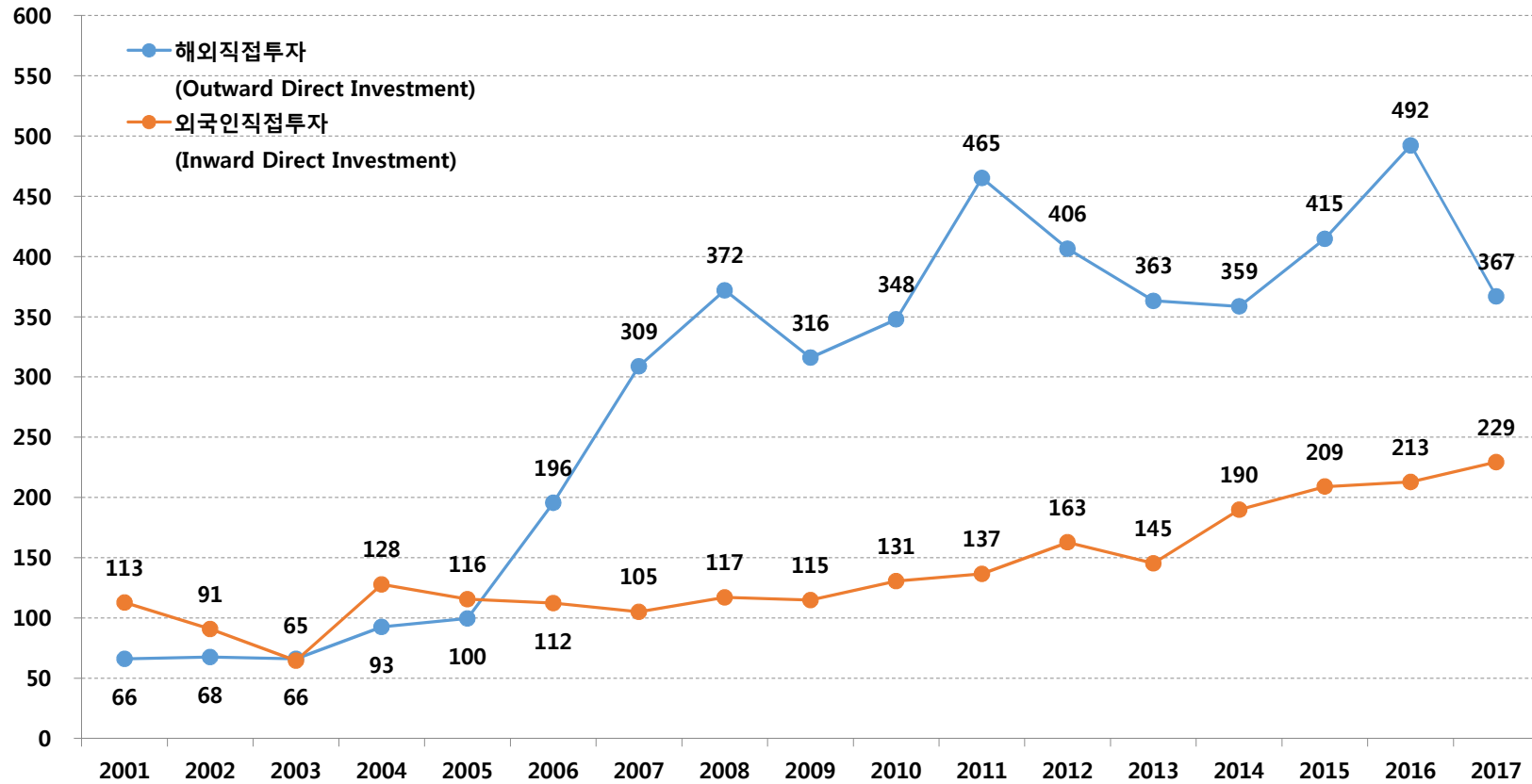
	취업자	구성비(%)		취업자	구성비(%)
농림어업	1,279	4.8	교육서비스업	1,903	7.1
광공업	4,527	16.9	보건·사회복지	1,921	7.2
건설업	1,988	7.4	사업시설관리	1,295	4.8
도소매업	3,794	14.2	전문과학기술	1,093	4.1
운수업	1,405	5.3	공공행정·국방	1,058	4.0
숙박음식업	2,293	8.6	금융보험업	791	3.0
합 계	15,286	57.2	기 타	3,378	12.6
			합 계	11,439	42.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Ⅱ. 대외경제 지표로 본 일자리 수지

1. 해외 직접투자,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신고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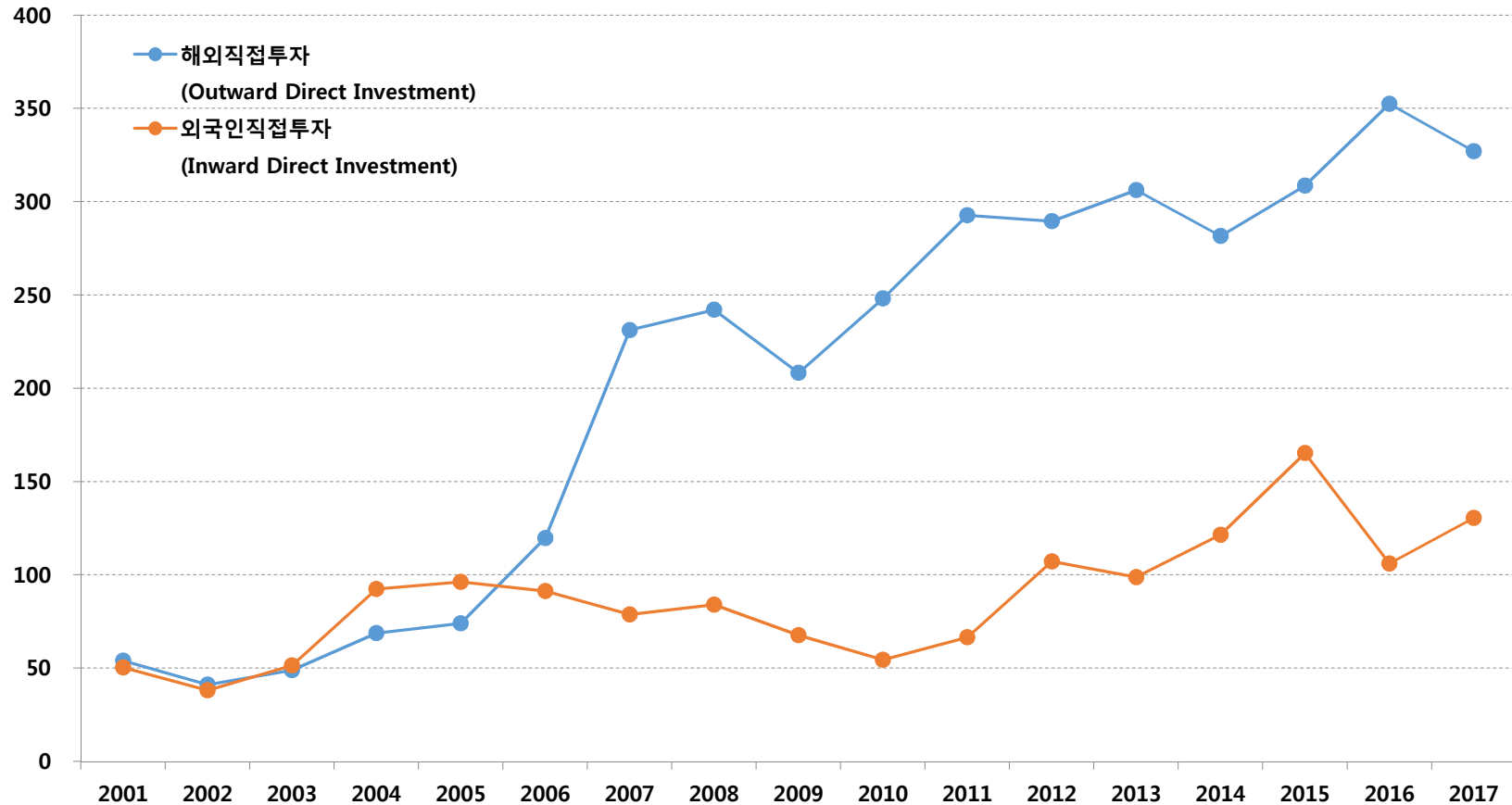
(단위 : 억달러)



자료 :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동향

2. 해외 직접투자,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투자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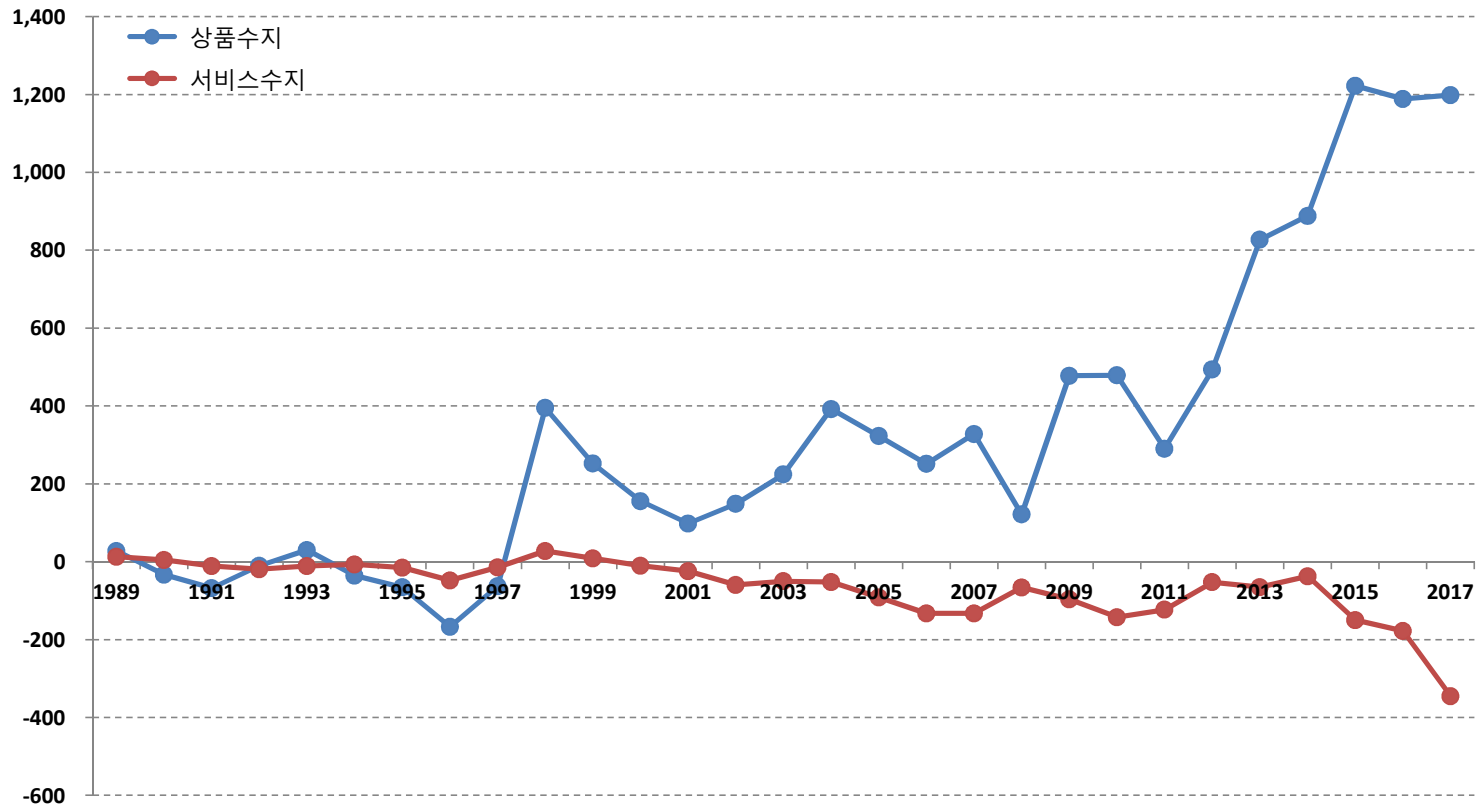
(단위 : 억달러)



자료 :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동향

3. 서비스 부문 국제수지 만성적 적자 : 경쟁력 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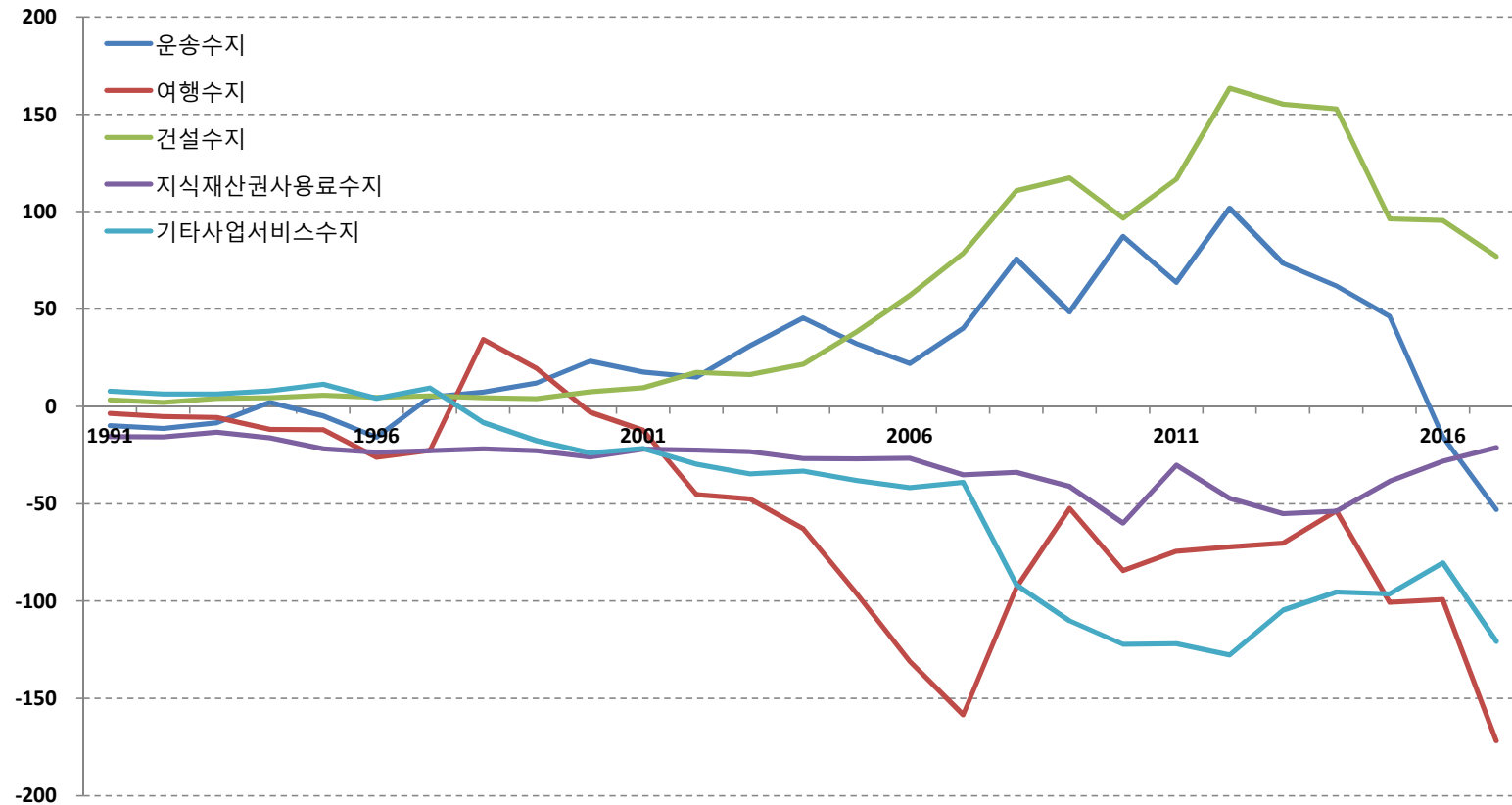
(단위 : 억달러)



자료 : 한국은행, 국제수지

4. 주요 서비스수지 추이

(단위 : 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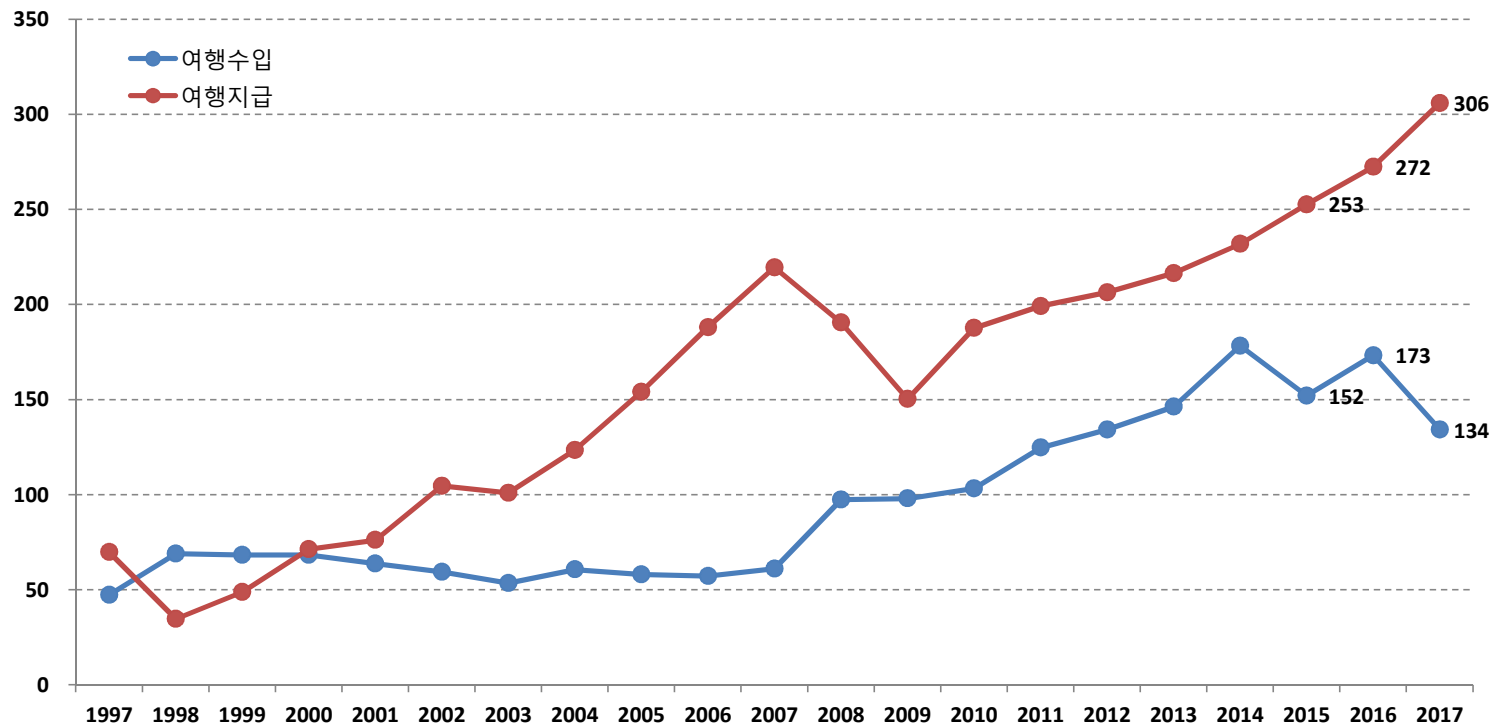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5. 여행수지 적자 추이

- 관광수입의 volat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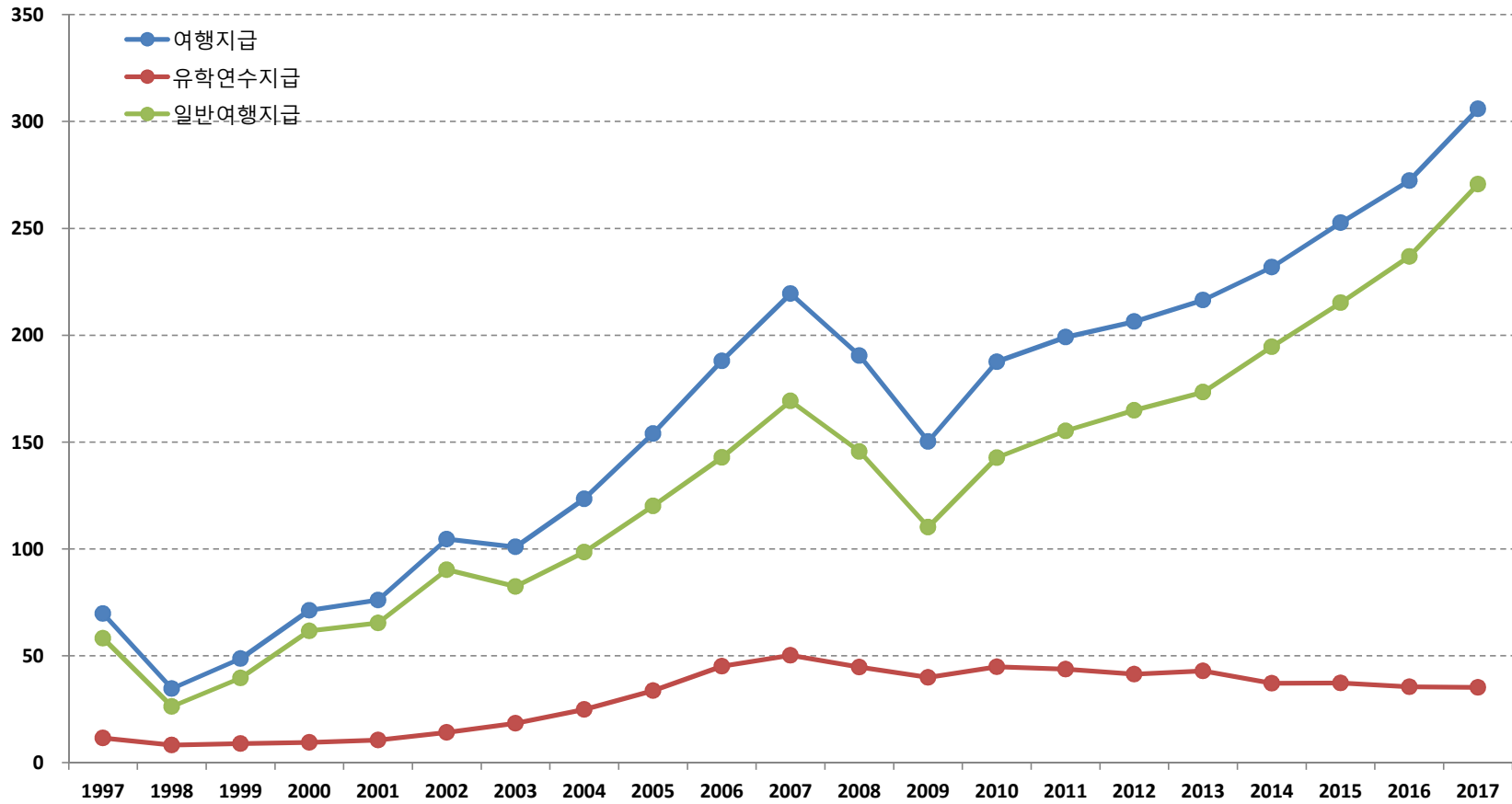
(단위 : 억달러)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6. 일반여행 및 유학연수 지출

(단위 : 억달러)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Ⅲ. 일자리와 서비스산업 중심의 경제운용

- 서비스업의 투자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1. 일자리 우선의 국정운영

- **일자리 창출의 절박함과 어려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결여**

-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는 각오 결여
- 아직도 안된다는 것이 너무 많아 : 청년 취업부진과 무관하게 생각
 - ex) 송현동 7성급 호텔, 설악산 케이블카, 화옹반도 동부 유리온실
 - ※ 황하석림 : 입장료 110, 땃목 90, 나귀마차 90, 케이블카 50위안
 - ※ 풍력발전기 : 중국 76,421, 일본 1,934(2013), 한국 343대

- **정부부터 일자리를 정책판단의 최우선 잣대로**

- 고용진흥 확대회의 VS 수출진흥 확대회의
- 일자리영향 평가제 VS 환경영향 평가제
 - ※ 알뜰 주유소, 원격조종 지하철
- 「재계 순위」, 훈장도 고용증가 기준, 인건비 지출 총액 기준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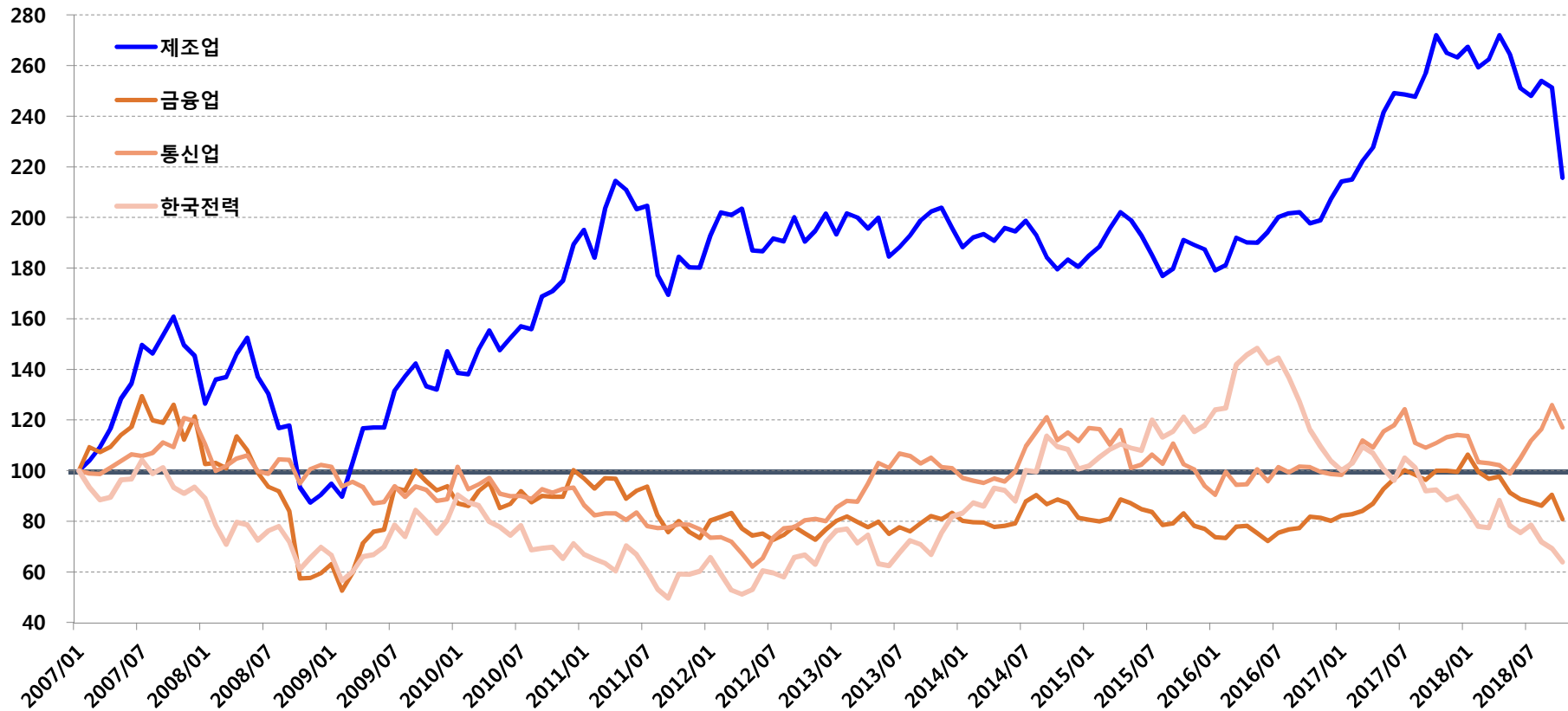
2. 기업하기 좋은 환경 = 돈을 벌 수 있는 여건

- **우리는 지금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실패**
 - 외국인 투자유치 < 해외투자
 - 중국과의 외국인 투자유치 경쟁
 - 중국은 적극적으로 서비스산업 투자 유치
 - 상해경제자유구역까지 설치
- **경제자유구역/동북아 비즈니스 센터/동북아 금융중심 구상 실종**
 -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 실종
 - 외국계 금융회사 철수 움직임 가시화
 - ※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 MENA지역의 금융, 교육, 의료, 교통중심으로 부상
 - 21/25 은행, 11/20 투자사, 8/10 보험사, 8/15 로펌
 - UAE 헌법 121조, DIFC 설치법, 금융자유구역법
 - 영국인 센터장, 영국법·영국 금융감독규정 적용

3. 서비스업이 돈을 벌어야 투자(유치)가 가능하다.

< 주요업종 주가지수 추이 >

(2007.1월말 = 100)



자료 : 한국거래소, 주식통계

4. 서비스업이 이익을 못 내면 고용창출 못해

- 투자부진 → 고용부진
- 국가 세입 감소
- 주가하락 → 국부잠식, 국민연금 수익율 저하로 인한 조기 고갈
 - 우리기업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떨어뜨려
- 내수부진 → 경기침체 지속
- 재벌들에게 투자하라고 종용해도 이익이 나지 않는 투자는 하지 않아

5. 고부가가치화(고급화)와 물가안정을 혼동

- 소득수준이 2만불에서 4만불로 높아지면 하루에 밥을 여섯끼 먹나?
- 제조업은 고급화와 해외수출로 지속적 성장
 - 가격규제는 무의미하다는 것 79년에 결론 : 투기와 부패만 조장
 - “재판매 불가능”으로 서비스산업에는 가격규제 유혹 상존
- 중요 서비스업은 사회적 위화감, 민생안정 등을 이유로 고부가가치화를
 봉쇄, 경쟁력 상실
 - 금융, 통신, 의료, 교육, 보육 등 주요 서비스산업이 모두 이익을 못내
 - 교육, 의료, 관광 등에서 막대한 수요의 해외 유출

6. 서비스산업에 대한 시각의 전환 : 비경제부처?

- 보건복지부 : 의료, 보육, 사회복지서비스, 의약, 화장품 · 향수
- 문화관광부 : 문화 · 예술 · 엔터테인먼트 · 게임 · 콘텐츠, 관광, 체육
- 교육부 : 사교육 억제하면 공교육 정상화 되나?
 - 수많은 사설학원을 위한 정책 있었나?
(보습, 예체능계 학원 이외의 대학 진학도 못한 사람들 위한 교육시설에 더 지원해야)
- 방통위 : 방송 · 통신산업이 규제만의 대상? 산업정책 실종
- 금융위, 금감원 : 금융산업은 다른 정책실현의 수단?

7. 제조업의 성공요인 벤치마킹 : 개방 / 경쟁

- **조기 개방으로 국제 경쟁에 노출** : 시험 안보는데 공부하나?
(서비스업종 중 유일하게 경쟁력이 있는 두 업종?)
제조업은 수입 개방, 서비스업은 투자 개방
- **모든 부족한 생산요소를 외부에 의존해서 성장**
 - 따라 잡고 나면 남의 힘에 도움 받고 싶어도 받을 데도 없어
 - 의존이 자립의 길, 혼자 힘으로는 시간의 싸움에서 못 이겨
-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고부가가치화 실현**
 - 부가가치 창출은 고급화를 통해서 더 많이 가능

8. 제조업 성공전략, 그대로 벤치마킹 ; 수요 확보

- **모든 업종이 공급과잉, 과당경쟁 → 외국 수요 없이는 더 이상 클 수 없어**

- 농업, 의료, 관광, 교육, 금융 모두 해외수요 개척
- 앞으로 FTA에서 상대국 서비스 시장 개방 요구해야 : 특히 한·중 FTA
(일본은 중국 서비스산업에 적극 투자하기 시작)

- **고급화 허용을 통한 내수 확충**

- 양적 증가는 포화상태 근접, 질적 고급화를 통한 내수확대 추구해야
- 정서적 거부감 극복과 실질적 이익을 알리기 위한 경제교육·홍보 강화
- 보편적 복지의 최대의 해악 : 가격규제, 고급화 봉쇄

9. 제조업 성공전략, 그대로 벤치마킹 ; 대외의존

-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서 외투유치가 더 절실한 이유
 - 처음에는 고객에 대한 Access 자체가 불가능 ; 브랜드, 트랙레코드가 중요
 - 제조업처럼 모방이 쉽지 않다 ; 기계·장비가 아니라 전문인력 유치
 - 경영여건 뿐만 아니라 고액 연봉의 전문인력들의 생활환경 확보
- 고급 서비스업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공간 확보
 -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 투자유치는 바로 고객유치로 이어질 수 있다.
 - 중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의 중요성 : 중국 수요를 더 확보할 수 있다.
- 농업, 서비스업에 외국인 투자는 커녕 국내투자도 거부
 -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보호한다면서 외국인투자자에게만 유리한 여건 조성

10. 제조업의 성공전략, 그대로 벤치마킹; 규제혁파

- 차별 제거 : 세제/금융, 중소기업 분류, 산업단지, 외국인 투자지역
 - 서비스산업 투자유치를 위해 한 것이 무엇이 있나?
- 규제 혁파
 - 보육료 규제 · 건강보험수가 규제의 문제
 - 토지이용 규제가 암적 걸림돌 : 다른 나라는 토지확보 · 제공
- 경쟁이 불충분하더라도 규제를 하지 말고 개방을 하라.
 - 개방은 가장 빠르고 유효한 사업자 견제수단
 - 기업도 규제를 요구하지 말고 개방을 수용

11. 한-미, 한-EU, 한-중 FTA ; 서비스산업의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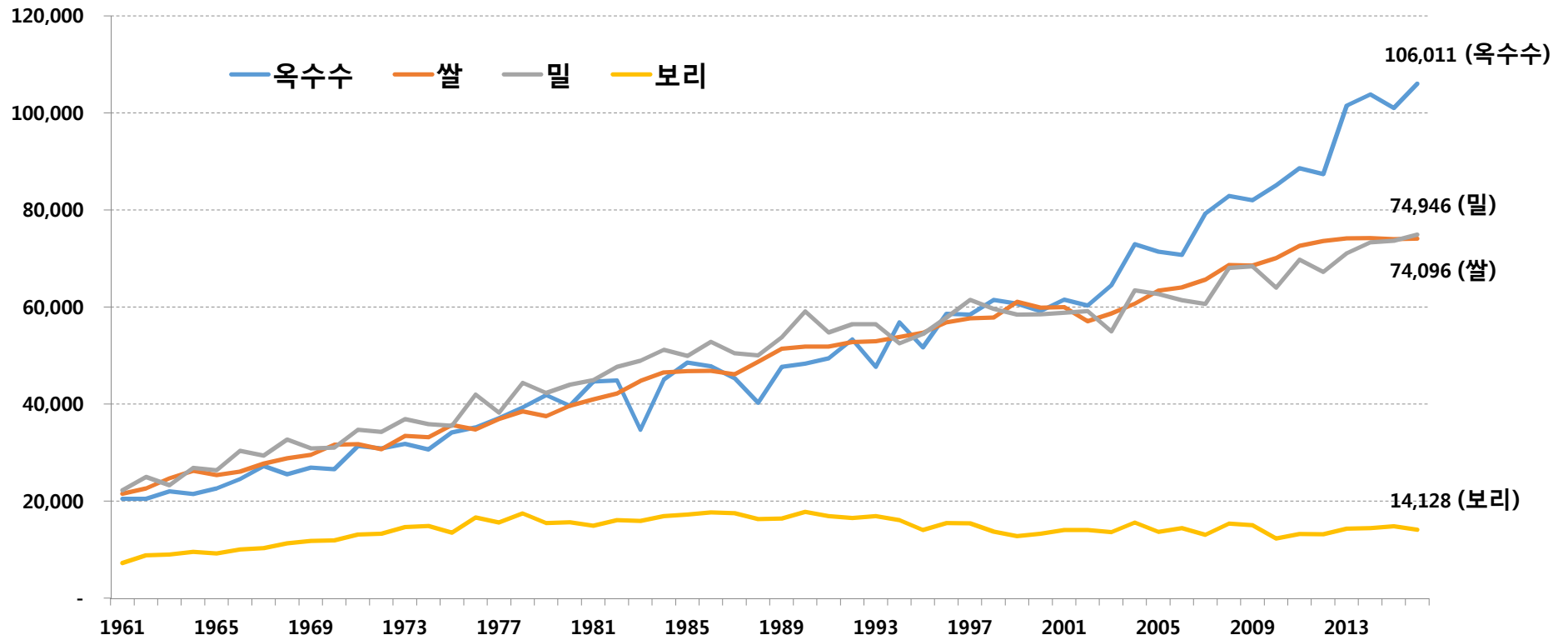
- FTA를 상품 수출·수입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은 넓은 사고
 - 서비스업투자유치가 더 중요 (일자리 창출)
 - 국내 경쟁기업체 자극효과가 더 중요
- 서비스 산업에서 우리보다 경쟁력 있는 나라 : EU, 미국
 - 고수하고 뒤야 바둑이 는다.
 - 개방해도 투자유치 제한적일 것 → 적극적인 유치노력이 필요한데 과도한 규제로 “한국에서 서비스산업을 해서는 돈벌기 어렵다”로 귀결
- FTA와 관련한 그 많은 터무니 없는 기우들
 -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나라들 간의 경쟁이 격화될 뿐 (농업)
 - 패배주의에 입각해서 나라를 경영?
- 앞으로 FTA : 농업, 제조업시장 여는 대가로 상대국 서비스시장 개방 얻어내야
 - 이런 관점에서 한중 FTA는 한계(제조업 주무부처가 통상교섭)

12. 농업의 무한한 잠재력; 농사와 농업

- 자본, 기술, 경영, 마케팅 : 고부가가치 농업이 가능하다.
 - 일본, 중국에 무한한 고급식품 시장 존재
- 농업은 농민만 해야 한다? 땅과 노동만을 제공하고서 땅과 노동에 대한 대가 이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가?
- 농업의 기업화 (농업경영체 육성)와 지대, 임금 소득은 같고 경영에 따르는 위험은 회피 가능
- 외국인 투자의 효과 : Dole, Danon
 - ※ 한국농업의 실패 : 식량자급에만 집착

전세계 주요 곡물 생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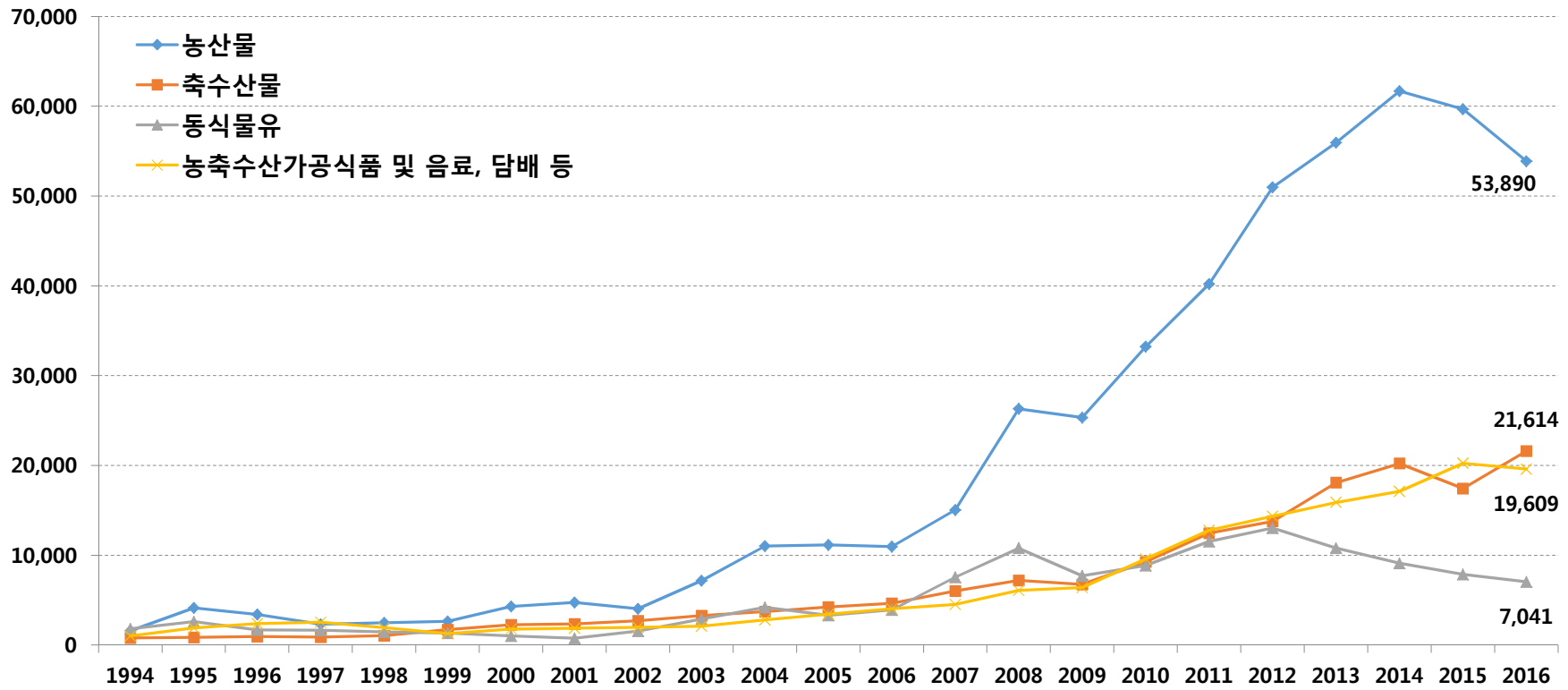
(단위 : 만톤)



자료 : FAO STAT

중국 농축수산물 수입액 추이

(단위 : 백만달러)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통계연감

< 중국 농축수산물 수입액 추이 >

(단위 : 백만달러)

연도	농산물	축수산물	동식물유	농축수산가공식품 및 음료, 담배 등	농축수산물 합계
1994	1,612	816	1,827	1,038	5,293
1995	4,140	865	2,619	1,926	9,550
1996	3,406	953	1,695	2,410	8,464
1997	2,330	917	1,678	2,564	7,489
1998	2,502	1,055	1,488	1,947	6,992
1999	2,668	1,729	1,359	1,286	7,042
2000	4,321	2,279	1,023	1,810	9,433
2001	4,749	2,355	776	1,883	9,763
2002	4,063	2,709	1,580	1,979	10,331
2003	7,174	3,308	2,925	2,107	15,514
2004	11,031	3,735	4,209	2,810	21,785
2005	11,161	4,258	3,311	3,458	22,188
2006	10,976	4,662	3,920	4,071	23,629
2007	15,056	6,024	7,576	4,543	33,199
2008	26,318	7,200	10,801	6,091	50,410
2009	25,352	6,769	7,737	6,416	46,274
2010	33,246	9,278	8,884	9,608	61,016
2011	40,225	12,464	11,540	12,797	77,026
2012	50,982	13,795	13,041	14,349	92,167
2013	55,972	18,099	10,823	15,898	100,792
2014	61,717	20,233	9,119	17,126	108,195
2015	59,690	17,448	7,892	20,263	105,293
2016	53,890	21,614	7,041	19,609	102,154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통계연감

주요국의 농업 및 제조업 취업자 비중

구분	농업 취업자 비중	제조업 취업자 비중
미국(2017)	1.4%	10.7%
호주(2013)	4.8%	15.6%
캐나다(2015)	1.6%	9.5%
일본(2016)	3.4%	16.6%
한국(2017)	4.8%	17.1%
독일(2017)	1.3%	19.0%

자료 :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13. 의료산업의 잠재력

- 산업구조는 인력 양성을 따라 간다 : 70년대 대입 우선순위
- 의료산업이 우리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
- 의료산업에 대한 투자를 막고 있는 우리나라의 규제
(비영리 병원과 투자개방형 병원 : Lease 하면 되고 투자 유치하면 안 된다?
차입하면 되고 투자 유치하면 안 된다? : 한 마디로 투자에 대한 대가 불인정)
- 외국인 환자 유치를 두려워하는 복지부
- 건강보험 수가 규제의 귀결 : **중요과목의 의사 공급 격감**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 저해

주요국 의료관광객 유치 실적

(단위 : 만명)

구분	2003	2008	2013
한국	-	6	21
태국	63	140	250 ^e
싱가포르	20	57 [*]	120 ^e
말레이시아	10	37	67 [*]
인도	15 [*]	27 [*]	85

주 : e표시는 추정치이며, *표시는 해당년도 수치가 없어 가장 근접한 연도 수치를 기재하였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International Medical Travel Journal 등

14. 결론

- 일자리 생긴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각오가 필요
 - 세상에 공짜는 없다. 대가를 치러야
- 경제가 잘 되면 모든 부작용은 완화, 해결 가능
 - 사회복지 지출 확대, 환경보전 투자 확대
- 해야 할 일 못해? 안 해야 될 일이라도 하지 말아야
 - 투자활성화, 일자리창출에 역행하는 일 비일비재

IV. 고용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1. 10.3% 노조가 전체근로자의 이익을 대변?

구분		인원수	비고
노조가입근로자		197만명 (10.3%)	
	한국노총 소속	84만명 (4.4%)	
	민주노총 소속	65만명 (3.4%)	
	기타	48만명 (2.5%)	
노조 미가입 근로자		1,720만명 (89.7%)	
임금근로자		1,917만명 (100.0%)	
비임금근로자		675만명	
	자영업자	564만명	
취업희망자		324만명	청년층 : 114만명
	실업자	103만명	

※ 임금근로자 중 기간제근로자 293만명, 파견근로자 12만명

주 : 1. 노조가입률과 임금근로자 수는 2016년 기준이며, 그 외는 2017년 수치임.

2. 취업희망자는 "실업자 + 잠재경제활동인구 등"으로 체감실업자 개념임.

3. 파견근로자 수는 고용부, 파견근로자사업현황(사업체조사)에서 조사된 수치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조직현황; 고용노동부, 파견근로자사업현황

2. 심각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 완성차 K사 원·하청 임금격차(2014)

구분	K사	K사 사내하청	1차 협력사	1차 협력사 사내하청	2차 협력사	2차 협력사 사내하청
평균 임금	9,935만원	5,000만원	4,800만원	3,000만원	2,800만원	2,200만원
격차	100.0%	50.3%	48.3%	30.2%	28.2%	22.1%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 2015.7

- 완성차 K사 생산직 인원 : 2만 2,470명
- 3년간(2012~14) 생산직 청년 채용 132명
- 현행 노동법제가 대기업 노조 가입근로자만 과보호한 결과

3. 노동개혁의 핵심 : 임금체계 개편(1)

- 연공급 호봉제가 지배적 : 300인 이상 기업의 62.9%
- 생산성과 임금의 과도한 격차
 - 해고의 동기 상승, 정년, 희망퇴직 불가피
 - 청년 신규채용 감소

< 연령계층별 임금과 생산성 비교 >

구분	34세 이하	35~54세	55세 이상
임금수준	1	1.73	3.02
생산성	1	1.05	0.6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4.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의 불가피성

- 근로자 해고 필요성 감소, 고용안정
- 정년, 명예퇴직의 필요성 감소
 - 미·영 등에는 정년제도 없음.
 - 60세 정년의무화와 임금피크제 도입은 임시방편에 불과
 - : 정년 연장이 60세로 끝나지 않을 것
 - 임금피크제도 당연히 흡수
- 근로자간의 공정한 보상에 의한 동기부여, 생산성 향상

5. 법이 요구하는 임금체계 개편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의2 >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대표자)은 사업 또는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용부 2대 지침 >

- 공정인사지침은 해고에 대한 안전장치입니다.
- 임금피크제 지침은 정년 연장시대의 일자리 나침반입니다.

6.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근로기준법 제94조 1항) 인가?

-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필요
 - 소수의 몇 명이라도 불이익이 있으면 불이익 변경
 - 연봉제 도입으로 하위등급자의 연봉이 삭감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 : D등급은 5% 삭감)
-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총인건비 유지, 근로자 불이익을 최소화한 연봉제 도입에
사회통념상 합리성 인정
(2년 연속 최하위 등급만 감액, 한 번이라도 벗어나면 회복,
총인건비 유지, 감액규정 도입 8년 후 실제 감액 시행)
 - 연봉제, 실적 포상제 도입 그 자체만으로는 불이익 변경 아님.
 - 명퇴수당은 낮아졌으나 기초임금이 인상되어 총액이 낮아지지 않은 경우
-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은?

7.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연봉제) 도입의 현실적 방안

※ 노조의 합의가 있으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도 가능

- 기업이 지불하는 임금총액 유지
- 임금삭감은 하지 않고 호봉승급분, 임금인상분을
직무·성과에 따라 집중 배분
- 호봉승급을 직무·성과에 따라 차등
- 신입직원부터 적용 : SC은행 등 사례
- 희망자만 연봉제 적용

8. 세계 최장 근로시간 · 최저 생산성

< OECD 주요국 임금근로자의 연간근로시간 비교(2016) >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OECD
근로시간	2,052	1,789	1,724	1,298	1,383	1,694	1,692

자료 : OECD

< 우리나라 완성차사 국내외 임금·생산성 비교(2014) >

구분	한국	미국	중국	체코	인도	러시아	브라질	터키
HPV 시간	26.8	14.7	17.7	15.3	20.7	16.2	20.0	25.0
임금 만원	9,700	5,757	1,344	2,056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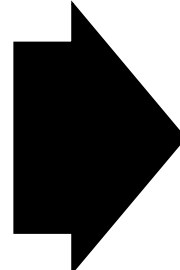
주 : HPV는 자동차 1대를 생산하는데 걸리는 총시간

9. 최장 근로 · 낮은 생산성의 원인

- 무리한 연장근로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 규제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
 -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근기법 제50조제1항)
 - 연장근로 허용 주 12시간 (제53조제1항) : 50% 할증(제56조)
 - 휴일근로 50% 할증 : 하루 8시간, 토·일 16시간
- 휴일근로 중복할증 소송으로 더 심각해질 가능성
 -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 중복할증 인정
 - 현재 5건 대법원 계류 : 회사패소 4건, 회사승소 1건
- 대법원 5년 동안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
 - 근로자도 사용자도 모두 원하지 않는 결과 초래

10. 예상되는 Scenario

< 현 행 >		
주중근로	40h × 100	4,000
주중 연장근로	12h × 150	1,800
토요일 근로	8h × 150	1,200
일요일 근로	8h × 250	2,000
계	68시간	9,000



(1) 사용자측 Scenario		
주중근로	40h × 100	4,000
주중 연장근로	12h × 150	1,800
토요일 근로	×	-
일요일 근로	×	-
계	52시간	5,800

※ 현행대비 근로자 임금 35.6% 감소

(2) 근로자측 Scenario		
주중근로	40h × 100	4,000
주중 연장근로	×	-
토요일 근로	4h × 200	800
일요일 근로	8h × 300	2,400
계	52시간	7,200

※ 현행대비 근로자 임금 20.0% 감소

-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증대로 연결되는 해결책 필요

11. 통상임금 문제와 고용창출

- 통상임금 논란의 배경
 - (1982년) 정부, 시행령 개정
 - (1988년) 정부, 예규 : 정기상여는 통상임금 아님
 - (1996년) 법원, 통상임금 범위 확대
 - (2012년) 하급법원,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 2013. 12 대법원 판결 내용
 -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 3가지 요소를 갖추면 노사합의와 관계없이 통상임금
 - ※ 고정성 인정 : 일할계산 / 고정성 부정 : 재직자 요건, 최소근무일수
 - 단, 기업 경영상황 반영하여 신의칙 적용
 - ⇒ 이 경우 3년 소급분 청구 불가

12. 통상임금 확대에 의한 귀결

- 대기업, 공공부문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 확대

< 통상임금 기준 임금인상률 >

구분	전체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인상률	8.2%	5.8%	5.8%	9.6%	18.2%

자료 : 경총, 2014년 임금조정실태조사

- 청년 신규고용에 미치는 악영향

- 노동비용 1% 증가 시 고용 0.24~0.27% 감소

13. 정년60세 의무화와 일자리 창출(1)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13.4)
 - 1) 60세 정년 의무화(제19조)
 - ⇒ 60세 정년 의무화, 60세 정년 미달 시 60세 정년으로 간주
 - ※ 300인 이상 사업장 '16.1.1, 300인 이하 사업장 '17.1.1부터 적용
 - 2) 임금체계 개편 등과 연계(제19조의2제1항)
 - ⇒ 60세 정년 연장 시 노사는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 임금피크제를 포함하나, 이보다 넓은 개념
 - ※ 법안 심의과정에서 정년연장 시 임금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여야가 모두 인식하고 법 문구를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정리(속기록에 명시)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 부동의시 조치 이행 불가
- 정년 의무화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 정년연장에 따라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으로 청년층 신규 고용창출 여력 저하
 - 고직급 장년 인력 과다로 인한 인사관리 어려움.

14. 정년60세 의무화와 일자리 창출(2)

- 정년 60세 의무화로 인해 발생한 수혜자 인건비 : **24조 6천억원**
 ⇒ **62만 8천개의 일자리 창출 자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2017~2019)
정년의무화 수혜자 인건비 총액	대기업	2조3,907억원	2조8,574억원	3조3,456억원	24조 1,408억원
	중소기업	-	7조6,504억원	7조8,967억원	
창출가능 청년층 일자리수	대기업	5만 54명	5만7,857명	6만5,515명	62만 7,830명
	중소기업	-	22만7,401명	22만7,003명	

15. 당사자가 원하는 기간제근로자 기간 연장

- **현행 기간제법 : 기간제 2년 이상 사용 시 “무기계약직(정규직)” 간주**
 - 같은 직장에서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고(일할 권리·기회 박탈),
 - 최대 2년 마다 직장을 새로 구해야 하는 상황(고용불안 반복) 등 부작용 초래
- **정규직 전환 : 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의 선택 영역으로 남겨야**
< 기간제근로자(근속 1년6개월~2년 미만) 정규직 전환 비율 >
23.2%(12.3)→12.8%(13.3)→18.4%(14.3)→13.2%(15.3)→19.9%(16.3)→23.0%(17.6)→27.5%(18.6)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기간제근로자 현황 조사
- **다수의 기간제근로자들은 기간제한 폐지 또는 연장을 원함**
 - 기간제근로자의 53.0% “현 사업장에서 기간제로 기간제한 없이 근무 희망” (2014. 고용노동부)
 - 기간제법의 2년 사용기간제한이 자신의 근로권을 침해하였다며 기간제 근로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례도 있음(2010헌마219)

16. 파견근로 확대에 의한 고용증가 가능성

● 현행 파견법은 32개 업무에 한정해서 파견 허용

- OECD 회원국 중 터키 다음으로 규제가 높음(2013, OECD EPL)
- 특허전문가, 여행안내업무, 공연예술업무 등 기업수요와 무관
- 기업수요가 높은 제조업무는 6개월만 허용(일시·간헐적 업무)

● 파견규제를 풀면 일자리가 늘어난다

- ① 경영환경, 경기에 탄력적으로 적응 : 일시적 업무증가 시 정규직 채용은 부담
(정규직은 해고가 어려움)

⇒ 이 때 초과근로가 아닌 파견근로자를 사용한다면? : 신규일자리 창출

- ② 실업자(고령자, 여성)은 정규직 채용이 사실상 불가능 ⇒ 파견이라면?

* 독일 하르츠 개혁 후 늘어난 파견근로자 2/3는 기존 실업자

※ 파견규제 풀면 정규직을 잠식한다? : 규제 전혀 없는 나라도 2~3% 수준

16. 파견근로 확대에 의한 고용증가 가능성

< 파견 확대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

- **한국노동연구원(2006년, 7천개 사업장 조사)**

- 파견업종 확대 시 3만명의 시장수요 발생 : 이 중 60%는 신규일자리
- 추가사용의사를 밝힌 업체 중 '제조단순노무종사자' 수요가 가장 큼(7,300명)

- **독일 : 하르츠개혁 후 5년간 파견근로자 2배 증가('03 : 33만 ⇒ '08: 76만)**

- 이 중 대부분(2/3)은 기존 실업자(순고용 증가)

- **일본 : 1999년부터 규제 완화하여 연평균 18%증가 ('99 : 106만 ⇒ '06 : 320만)**

- 특히 2004년 제조업무에 파견허용 후 폭발적 증가(7만('05) ⇒ 24만('06))

17.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

- **획일적 · 경직적인 우리 노동법제**
 - 법률,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다른 근로계약 불인정
- **현실적으로는 업종별, 기업별, 개인별 다양한 처지**
 - 기간제 기간 연장, 파견근로 허용업종 확대
 - 고용보장, 임금수준은 낮더라도 취업을 원하는 청년 미취업자
- **근로자 : 미취업자가 원하는 것을 반대할 권리, 누구에게도 없다.**
 - 좋은 조건, 높은 임금의 일자리가 아니면 못 만들게 해야 한다?

18. 결론

- 정년연장 60세로 끝나지 않는다.
- 임금체계를 개편해서 대비해야
 - 법이 요구, 일부 기업이 이미 하고 있는 것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도록 설계 가능
- 근로자를 내세워야 노동시장 개혁 가능
 - 경영자가 원하면 하려던 것도 안해
- 경영자들이 노사관계 법을 숙지하고 법이 허용한 수단 최대한 활용해야

사기 열전 화식열전

- 사람은 각자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서 그 힘을 다해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다. 물건 값이 싼 것은 곧 비싸질 징조이고, 값이 비싼 것은 곧 싸질 징조이다. 사람마다 자신의 일에 힘쓰고 각자의 일을 즐거워하면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아 밤낮으로 멈추는 때가 없다.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몰려들고, 억지로 구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스스로 물품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어찌 도에 부합되어 저절로 그리 되는 징험이 아니겠는가?
- 이런 일들이 어찌 정령이나 교화, 징발, 또는 약속 등에 따라서 하는 것이겠는가?

장사가 잘 되고 취직이 잘 되는 세상

- 빈부의 차가 일어나는 것은 누가 빼앗거나 주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니다. 산업의 상호관계와 재화의 흐름을 잘 아는 자는 늘 여유 있고, 이를 제대로 모르는 자는 늘 부족하다.
- 2차 대전 때 포로수용소에서도 모두가 꼭 같은 조건으로 빈손으로 생활하기 시작하지만 두어 달이면 빈부격차가 발생했다고 한다.
-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은 장사가 잘 되고 취직이 잘 되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 공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고복격양가

日出 而作 日沒而息
鑿井而飲 耕田而食
帝力何有於我哉

해가 뜨면 나가 일하고, 해가 지면 들어와 쉬네
우물을 파서 물 마시고, 밭 갈아서 밥을 먹으니,
황제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 있으랴